

#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

주관부서	디지털직판담당부서
제정일자	2022.04.07

## 제 1 조(목적)

이 기준은 「금융투자업규정」 제 4-46 조에 따라 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예탁금에 대하여 회사가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예탁금 이용료(이하 “이용료”)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 2 조(지급대상)

회사가 투자자에게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투자자예탁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위탁자예수금
2. 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

## 제 3 조(이용료 산정기준 및 변경절차)

① 회사는 투자자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운용수익과 투자자예탁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직·간접 제반비용을 감안하여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정한다.

1. 예금자 보험료
2. 감독분담금
3. 지급결제 관련 비용
4. 인건비
5. 전산비
6. 그 밖에 회사가 투자자예탁금 관련 비용을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산정한 비용

② 회사가 지급하는 예탁금 이용료율(이하 “이용료율”)은 아래와 같다.

평균잔액	이용료율(연 이율)
1,000,000 원 미만	없음
1,000,000 원 이상	한국증권금융이 제공하는 이율 - 0.2%

\* 한국증권금융이 제공하는 이율(이하 “증권금융이율”) = 한국은행 기준금리 X 98%

\* 증권금융이율 변경 시, 변경일 익영업일부턴 적용함.

\* 평균잔액은 3개월 평균잔액 금액을 기준으로 함.

- ③ 회사는 운용수익 등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동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,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그 변동사항을 이 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④ 회사가 이 기준을 제정 및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일 7영업일전까지 그 내용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⑤ 회사는 이 기준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금융투자상품의 온라인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 및 영업점에 게시하여야 하며,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내역을 변경 예정일 전부터 1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이 항 전단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게시하고, 「금융투자업규정」 제 4-37 조에 따른 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시 투자자에게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.

#### 제 4 조(이용료 산정 및 지급방법)

- ① 이용료는 제 3 조 제 2 항에 따라 지급대상기간의 예탁금 일평균 잔고에 이용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원 미만은 절사한다.
- ② 지급대상기간은 전분기의 지급일로부터 금번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, 정기지급은 1, 4, 7, 10 월 두번째 일요일 다음 영업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지급대상 계좌의 폐쇄시에는 최종 지급일로부터 계좌폐쇄일 전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계좌 폐쇄일에 당해 예탁금 이용료를 정산하여 지급한다.
- ③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지급일을 지정할 시에는 지정일에 지급할 수 있다.

## 부 칙(제정)

제 1 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22년 04월 07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발생된 예탁금 이용료 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이 기준에 의한 것으로 본다.